

노인정(4개소) 건물신축 취득 승인(안)

의안	
번호	53

제출년월일 : 1991.

제출자 : 안산시장

1. 제안이유

-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 심의 (노인정)
 - . 노인의 사회역할 조장 및 소외감 해소
 - . 노인휴식공간 제공으로 보람있는 노후 생활 영위

2. 주요골자

- 사업명 : 노인정 건립
- 위치 : 안산시 선부동 1025번지, 월피동 507번지, 와동 803-7,
고잔동 662-1번지
- 사업량 : 4동
- 규모 : 지하1층, 지상1층
- 연면적 : 100M² 이내 (개소별)
- 용도 : 할아버지방, 할머니방
- 사업기간 : 1992. 6 - 1992. 12 ✓

3. 참 고 사 항

가. 관련법규

-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
공유재산의 취득,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
이라 한다.)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(지방자치 단체의 사무)

- . 2호 : 주민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상황

- 소요예산 : 226,368천원 (92 본예산 계상) 그액과는 6억 3천 6백 원 차이
 - . 시설비: 216,000천원
 - . 시설부대비: 1,728천원
 - . 용역비: 8,640천원

4. 기 타 : 위치도1부.